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,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・보완하여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명칭 및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함(안 제2조)

나. 사용신청 및 허가 기간을 변경함(안 제11조) : 3년 → 5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도로명주소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.

마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.(2015. 9.24.~2015.10.14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(안)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성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,

○ 「도로명주소법」 시행에 따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위치를 당초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서 규정 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 및 연장허가 기간을 본 조례에 반영 하여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201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승인안
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안이유
 ○ 201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있어 「지방재정법(제18조)」이 개정됨에 따라 「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맞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 ○ 201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: 16,600만원
 - 산정기준 : 목표액('08~'17)에 따라 매년 16,600만원씩 출연
 ※ 성주군 목표액('08~'17) : 166,000만원(도 전체 목표액의 2%)
 ※ 성주군 출연총액('93~'15) : 284,800만원
 ○ 농어촌진흥기금사업 현황
 - 신청자격 : 농어업인, 농어업인단체, 농어업법인, 농어업관련기업체, 농협·수협 등 생산자 단체
 - 지원 한도액 : 개인 2억원, 법인 5억원
 - 지원조건
 · 운영자금 : 연리 1.0%, 2년거치 3년 균분상환
 · 시설자금 : 연리 1.0%, 3년거치 7년 균분상환

4. 참고사항
 가. 관계법령
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 「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
 「행정자치부 훈령」
 「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
 나. 예산조치 : 2016년 당초예산 편성(16,600만원)
 다. 기타사항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기금출연 승인(안)은 지방재정법(제18조) 및 2016년도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,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우리군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16억 6,000만원을 출연하며, 2016년도 출연금은 1억 6,600만원으로 경상북도 조성 목표액 80억 원의 2%에 해당하는 금액 입니다.
- 우리군이 1993년부터 금년도까지 출연한 총액은 28억 원으로 경상북도 조성 총액 1,877억 원의 약 1.5%이며, 2008년부터 금년까지 우리군에 지원된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은 총 54농가 82억 원이며, 2016년도 신청사업은 5농가 11억 원입니다.

○ 검토결과 「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의해 추진되는 기금사업으로 농촌 소득증대·농업시설의 구조개선·신기술 개발 및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지속시키는데 기여하는 재원이므로 본 기금출연(안)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2016년도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
승인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안이유
 ○ 2016년도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에 있어 「지방재정법(제18조)」이 개정됨에 따라 「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맞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 ○ 2016년도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금 : 30백만 원
 - 산정기준
 ・시군당 30백만~160백만 내에서 분야별 비중에 따른 배정
 ・성주군 총 비중이 도내 2%로 2016년도 총 배정액 1,400백만 원 중 최소액 배정
 ○ 조성목표액 : 2016년 기준 도 전체 20억원 (2020년까지 100억원)

4. 참고사항
 가. 관계법령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 - 「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
 - 「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
 나. 예산조치 : 2016년 당초예산 편성(30,000천원)
 다. 기타사항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 ○ 본 기금출연 승인(안)은 지방재정법(제18조) 및 2016년도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,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「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」 100억 원을 조성목표로 2016년도 조성액 20억 원 중 우리군 분담금 3,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- 도내 시군당 3,000만원에서 1억 6,000만원의 분담 기준으로 볼 때 우리군이 최소액으로 배정되었습니다.

○ 검토결과 「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3조제1항에 근거하여 조성되는 기금은 경북지역의 지속적,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과 자생력 제고에 사용되는 재원이므로 본 기금출연(안)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